

[사 건 명] 행심 2017 - 68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학급교체 등』 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고등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인용하여 『특별교육이수 5일
(보호자동반특별교육 1일)』로 변경하여 처분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10.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학급교체 등』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가. 청구인 ◇◇◇은 ◎◎고등학교 학생으로, 2017. 9.~10.경 발생한 같은 학교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사건에 관하여, 2017. 10. 20.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라 함)가 개최되어, 그 결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학급교체 및 특별교육이수 5일(보호자 동반 특별교육 1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통보받고, 2017. 11. 8. 이 사건 처분의 취

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가. 이 사건 발생 몇 달 전 청구인과 피해학생은 친하게 지냈는데, SNS 사건 발생 후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였고, 청구인이 피해학생으로부터 맞았으며, 이후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던 일이다. 그런데 피해학생이 ◇◇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피해학생이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 SNS사건이 문제가 되었다.

나. 피해학생의 상황과 감정에 따라 공정하지 못한 처분을 받았고, 함께 했던 다른 친구는 학폭위 때 사과하고 피해학생과 친하다는 이유로 가해 처분을 받지 않았는데 부당하다.

다. 피청구인 측은 학폭위 결과 통지서를 제때 보내지 않은 절차적 문제를 보였다.

III.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피해학생 명의의 페이스북에 피해학생 허락 없이 로그인

하여 여학생들에게 사귀자는 메시지를 보내고 남학생에 욕을 보낸 것, ◎대전이라는 페이스북에 피해학생에 대한 인신공격성 게시물을 게재한 것은 심각한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놀림이 반복되었고, 반성과 사과의 정도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처분조치 하였다.

나. 피해학생의 상황과 감정에 따라 판단한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드러난 객관적인 사실만을 가지고 학폭위에서 판단하였다.

다. 학폭위 결과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것이고, 청구인이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직접 송부하였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처분근거 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2. 인정되는 기초 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증거자료 및 피청구인의 구술심리결과(청구인은 출석하지 않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7. 9. 28. 청구인이 ○○○이 빌린 돈을 갚으라며 욕하는 것에 화가나 돈을 주며 ○○○의 뺨을 한 대 때림. ○○○을 왜 때리느냐며 피해학생이 다툼에 개입. 이때 ◆◆이 피해학생의 말투와 행동에 웃었고, ◆◆과 피해학생 간의 언쟁이 발생. 이후 피해학생이 교문 앞에서 ◆◆의 얼굴을 몇 차례 가격함.

나. 이후 ◆◆이 피해학생으로부터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의 친구 ▣▣고 ▤▤▤이 피해학생을 찾아가 피해학생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학생의 코뼈가 부러 짐.

다. 청구인, △△△는 피해학생 명의의 페이스북에 피해학생의 허락 없이 로그인하여 여학생들에게 사귀자는 메시지를 보내고 남학생들에게 욕을 보냄.

라. 청구인, ◆◆, △△△는 ○대전(○○고 대신 전해드림)이라는 페이스북에 가위, 바위, 보를 하여 진 사람이 피해학생을 놀리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로 하고, 이에 따라 진 사람이 그러한 글을 올림.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절차적 위법 여부

피청구인이 학폭위 결과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에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017. 11. 1. 폐문부재로 미배달된 것이므로 절차적 위법함이 없다.

나.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동법 제3조에 따르면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청구인이 피해학생 명의의 페이스북에 피해학생 허락 없이 로그인하여 여학생들에게 사귀자는 메시지를 보내고 남학생에 욕을 보낸 것, 가대전이라는 페이스북에 피해학생에 대한 인신공격성 글을 게시한 행위는, 피해학생에 대한 명예훼손 내지는 모욕에 해당하고,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므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동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

서 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폭위에서는 가해학생 조치별 세부기준에 따라 심각성 높음(3점), 지속성 보통(2점), 고의성 낮음(1점), 반성정도 보통(2점), 화해정도 낮음(3점)으로 판단하였고, 이는 합계 11점으로 6호 출석정지에 해당한다. 그러나 학폭위에서는 청구인과 피해학생이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더 중한 처분인 7호 학급교체 처분을 하였고, 동시에 5호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병과하였다.

관련학생 ◇◇은 감경처분을 받았고, △△△는 서면사과 처분을 받았는데, 청구인에 대해서만 관련학생들과 달리 두 개 처분을 병과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또한 사건 정도, 청구인과 피해학생의 관계에 비추어 보아도, 학급교체를 하여야 할 정도로 피해학생의 보호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지 않는다. 단지 청구인과 피해학생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않다는 가중처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피청구인측도 행정심판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구인과 피해학생과의 관계가 개선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현재 방학 중이고 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학급교체 처분은 취소하고 특별교육이수 5일(보호자 동반 특별교육 1일) 처분만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절차적 위법함이 없다.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징계양정과 관련해서는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일부 취소하고 특별교육이수 5일(보호자 동반 특별교육 1일) 처분함이 타당하다.

V. 결 론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특별교육이수 5일(보호자 동반 특별교육 1일)].